

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

집합투자기구 명칭 : KTB VIP 스타셀렉션증권투자신탁[주식]

항 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책임운용전문 인력 변경	-	2018.12.10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(권정훈 → 이종찬)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책임운용전문 인력 변경	권정훈	이종찬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<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제한> 집합투자증권에 투자: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 <p>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투자한도 초과: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 81 조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'가.투자대상' ⑤ 내지 ⑨, '나. 투자제한' ② 및 ③, ⑤ 내지 ⑦, ⑧의(가) 및 (라)에 따른</p>	<p><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제한> 집합투자증권에 투자: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<u>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)의</u>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 <p>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단, <u>법 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50 까지 투자할 수 있다.</u>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투자한도 초과: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 81 조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'가.투자대상' ⑤ 내지 ⑨, '나. 투자제한' ② 및 ③, ⑤ 내지 ⑦, ⑧의(가) 및 (라)에 따른</p>

		<p>투자 한도를 초과하게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,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은 '나. 투자제한' ②, ⑤ 내지 ⑦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</p>	<p>투자 한도를 초과하게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,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은 '나. 투자제한' ②, ⑤ 내지 ⑦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</p>
--	--	--	--